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650
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0. 10. 23.

제 출 자 : 고 성 군 수

1. 개정이유

- 지방행정 정보화 업무의 급속한 증가 및 전문다양화로 정보화 처리인력 및 역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임

2. 주요골자

- 공무원의 총정원 증원 : 2명(안 제2조)
 - 정보화기능 보강(전산6급1명, 전산9급1명) : 한시적(2002년12월31까지) 증가

3. 참고사항

- 근거법령
 - 시군 정보화사업 추진기능 보강방침 「행정12200-11975(2000.9.29)」

4. 본 문

- 붙임과 같음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증개정조례안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556명”을 “558명”으로 하고, 동조제1호중 “543명”을 “545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정원에 관한 적용례)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7월 31일까지는 다음 [표1] 을 적용한다.

[표1]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표

구 분	정 원
정원의 총수	580명
1. 집행기관의 정원	567명
2. 의회사무과의 정원	13명

- ③(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의 규정에 대한 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은 2001년 6월 30일까지 정한다.
- ④(한시적 정원에 따른 경과조치) 제2조 정원의 총수 및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중 2명(전산6급1명, 전산9급1명)의 존속기한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